

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마카오특별행정구 약학 기술 인원에 대한 형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약품 소매 부문 영업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

주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10 회] 제 17 호

2023 년 5 월 26 일 주하이시 제 10 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마카오특별행정구 약학 기술 인원에 대한 형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약품 소매
부문 영업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이 표결 통과되었다. 이를 공포하며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주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3 년 5 월 26 일

**마카오특별행정구 약학 기술 인원에 대한 형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약
품 소매 부문 영업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

(2023 년 5 월 26 일 주하이시 제 10 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통
과)

제 1 조 형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이하 “협력구” 라 약칭) 건설을 추진하고 마
카오특별행정구 (이하 “마카오” 라 약칭)의 약학기술자들이 협력구에서 편리하고 질
서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원칙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리고 “웨강야오 대만구 발전 계획 요강” “형친-광
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건설 총제적 방안” “형친-광둥 마카오 심화협력구 발전 촉진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협력구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정 조건을 갖추고 협력구에 등록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은 협력구 범위

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내의약품 소매 부문에서 직접 마카오 의료 인원 자격 허가 증서에 부합되는 약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이란 마카오의 유효 의료 인원 자격 허가 증서를 소지한 약사, 중약사, 중의사와 약국 기술 조수를 말한다.

제 3 조 협력구 약품 소매 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 (1) 마카오 주민 신분이어야 한다.
- (2) 마카오 유효 의료 인원 자격 허가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3) 마카오의 “의료 인원 전문 자격 및 영업 등록 제도”에 포함된 약사, 중약사, 중의사와 약국 기술 조수이다.
- (4)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의 훈련을 받고 검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 (5) 국가가 약학 서비스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기타 정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 4 조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이 협력구에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협력구의 “약품 경영 허가증”이 있는 약품 소매 부문에 초빙되거나 약품 소매 허가를 신청하고 약품 소매 서비스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 5 조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은 협력구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방법은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등록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 대하여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등록하고 업무종류, 업무기간을 명기하여야 하며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명부는 협력구 정

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무 사이트에 공포한다.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은 협력구 약품 경영 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 6 조 등록의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하며 등록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등록 유효 기간 내에 등록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 자격 허가 증서 종류, 영업 종류 또는 영업 부문이 변경될 경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원 등록 서류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은 협력구에서 영업함에 있어서 내륙의 약품관리 법률, 법규, 규정 및 표준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이 협력구 약품 소매 부문에서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 및 처방의 심사를 진행할 경우 내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협력구 약품 소매 부문이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한 마카오인 약사 또는 중약사를 배치할 경우 내륙 공인 약사 또는 공인 중약사가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된 마카오 약방 기술 조리, 중의사를 배치한 경우 내륙의 기타 약학, 중약학 기술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 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이미 등록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훈련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등록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은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의 요구에 따라 평생 교육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이 마카오에서 지속적인 전문 발전 활동에 참가

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하여 소정 학점을 취득한 경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제 10 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내륙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표준 규범의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의 협력 범위 내 약품 소매 부문의 영업 활동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등록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이 약품 소매 부문에서 더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등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평생교육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본인 또는 그 영업 부문은 제때에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에 등록하지 않은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이 협력구의 약품 소매 부문에서 직접 약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미 등록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이 명시된 업무종류, 업무기한을 초과하여 직접 약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협력구의 관련 주관 부문은 인가를 주지 않으며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내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준다.

제 13 조 이미 등록한 마카오 약학 기술 인원의 업무 활동이 내륙의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하여 업무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특정기간 내에 업무허가가 금지되거나 등록을 불허한 경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국 내륙의 법률, 법규, 규정에 정한 영업 금지, 등록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더 이상 인원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미 등록한 마카오의 약학 기술 인원이 등록을 취소 당하거나 등록을 취소 당한 경우 협력구 약품 관리 감독 부문은 관련 정보를 협력구 정무 사이트에 공포하여야 한다.

본 문서는 번역본이므로 내용은 중국어 간체판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제 14 조 본 규정은 2023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